

환경부공고 제2014-0240호

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2014년 4월 17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(제정)이유

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개정(법률 제12075호, 2013. 8. 13. 공포·시행) 및 「주택법」이 개정(법률 제12115호, 2013. 12. 24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층간소음 기준 적용대상(안 제1조)

「주택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으로 정함

나. 층간소음의 범위(안 제2조)

- 1)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
- 2) 문,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
- 3) 망치질,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
- 4)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
- 5) 헬스기구,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
- 6) 텔레비전, 라디오, 악기 등을 통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
- 7)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

다. 층간소음의 기준(안 제3조)

구분		주간(06:00~22:00)	야간(22:00~06:00)
뛰는 소리,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(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)	1분등가소음도 (Leq, dB(A))	43	38
	최고소음도 (Lmax, dB(A))	57	52
TV, 라디오,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(제2조 6호 적용)	5분등가소음도 (Leq, dB(A))	45	40

※ '05.7.1이전 사업계획 승인주택에 5dB보정

환경부 공고 제2014-235호

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」 입법예고

2014년 4월 8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악취방지법 개정('14. 3.24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가. 과징금 부과 관련 조문 정리(안 제12조제1항)

- 1)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통일하고, 행정처분 용어 변경(사용중지→조업정지)에 따라 관련 조문 일치

나.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환경측정분석사 추가(안 별표7)

- 1) 악취검사기관의 악취분석요원 자격요건에 대기환경측정분석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추가

다. 행정처분 기준 변경(안 별표9)

- 1)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용어 변경(사용중지→조업정지)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
- 2)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

환경부공고 제2014-162호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2014년 3월 24일 / 환경부장관

1. 제안이유

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시설물(웅수)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요금과, 시설물(연료)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와 중복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대상에서 시설물을 삭제(안 제9조)

- 하수도요금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와 중복 부과하고 있는 일부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

※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(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) 보고('13.12.9)

나.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시설물을 삭제(안 제10조)

-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을 함께 삭제